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생활화학용품의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 마련 등 >
■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90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입법배경에 대한 검토	4
2. 조문별 검토	12
1) 목적 및 정의	12
2) 국가 등의 책무, 피해자단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
3) 손해배상책임 및 인과관계의 추정	18
4) 정보청구권	20
5) 구제급여의 종류 및 지급 등	22
6) 구제급여 지급·지급중지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	26
7)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의 신청 및 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	29
8)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구제기금의 설치·운영	34

9) 생활화학용품피해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38
10) 불복에 대한 심사청구 등	42
11) 보칙(제3장)	47
11) 벌칙(제4장)	50

※ 참고자료 52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현황('24.8)	52
----------------------------------	----

I. 제안경위

2024년 9월 25일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2024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2015년 1월 1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함유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통과된 바 있음.

그러나 2011년 가습기살균제의 살균 원료인 ‘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니딘(PHMG)’ 또는 ‘염화 올리고-에톡시 에틸 구아니딘(PGH)’ 때문에 산모와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 손상을 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보듯이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는 관련법령의 미비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화학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

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의 화학적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생활화학용품의 화학적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생활화학용품”이란 소비자가 가정, 학교, 사무실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품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의 제품 및 위해우려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품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생활화학용품의 제조자등은 그 생활화학용품을 사용한 자가 사망하거나 생활화학용품질병에 걸린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안 제6조).

라. 생활화학용품질병 발생이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하여 생활화학용품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7조).

마.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자 등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권을 인정함(안 제8조).

바.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

하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명시함(안 제9조).

사. 판정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며,
판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공개와 방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16조 및 안 제18조).

아.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2조제1
항).

자.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심의
하는 기구로 환경부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생활화학용품
질병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를 둠(안 제45조제1항).

차. 생활화학용품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함
(안 제53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입법배경에 대한 검토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이마트, 홈플러스 및 롯데마트 등에서는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연평균 약 60만개씩 판매하였고, 이들 제품의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일부 피해자 및 유족은 2012년부터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정부는 2012년 2월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원인임을 역학조사¹⁾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법」에 근거하여 가해 기업에 대한 구상을 전제로 2014년 7월부터 피해접수 및 구제를 추진하여 왔음.

그런데 1차 피해접수('11.11~'13.6)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담당하다 이후의 접수·피해구제는 환경부로 이관되었고, 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이 가해 사업자에 대한 구상을 전제로 정부 재정에서 선지급되는 등 피해구제제도 체계의 법적·행정적인 미비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1)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12.9.5,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13.8.5)은 현재 모두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17.2.8. 제정되어 피해구제가 진행 중에 있음.

이에 제정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의 화학적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명확히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구제제도를 확립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함.

제정안은 총 4개의 장, 5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총칙)은 법안의 목적·정의, 국가 등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2장(생활화학용품피해 배상 및 구제)은 손해배상책임, 인과관계의 추정 등 손해배상의 책임·입증·생활화학용품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 및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3장(보칙) 및 제4장(벌칙)에서는 권한의 위임·위탁 및 벌칙·과태료 등을 규정함.

[제정안의 구성 체계]

구 분	세부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제1조) ■ 정의(제2조) ■ 국가 등의 책무(제3조) ■ 피해자단체(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제2장 생활화학용품피해 배상 및 구제	■ 손해배상책임(제6조) ■ 인과관계의 추정(제7조) ■ 정보청구권(제8조) ■ 구제급여의 종류·지급 등(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신청·유효기간(제12조·제13조) ■ 생활화학용품피해 판정위원회 관련(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 관련(제19조부터 제31조까지) ■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구제기금의 설치 및 운용(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 생활화학용품피해구제부담금의 부과 관련(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 불복에 대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구 분	세부 조문
제3장 보칙	■ 권한의 위임·위탁(제47조) ■ 보고 등(제48조) ■ 진찰요구 등(제49조) ■ 비밀유지 의무(제50조) ■ 조사 및 지원 등(제51조) ■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52조) ■ 심리상담 등의 지원(제5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4조)
제4장 벌칙	■ 벌칙(제55조) ■ 과태료(제56조)

다만, 동 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2024년 11월 기준 확립된 화학물질 관리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국회에서는 이전의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및 「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1990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여 1991년 시행하였는데, 해당 법률에서는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를 통해 그 위해정도에 따라 일반 화학물질, 유독물, 특정 유독물로 구분하고, 제품이 아닌 물질을 기준으로 범위를 차등화하여 관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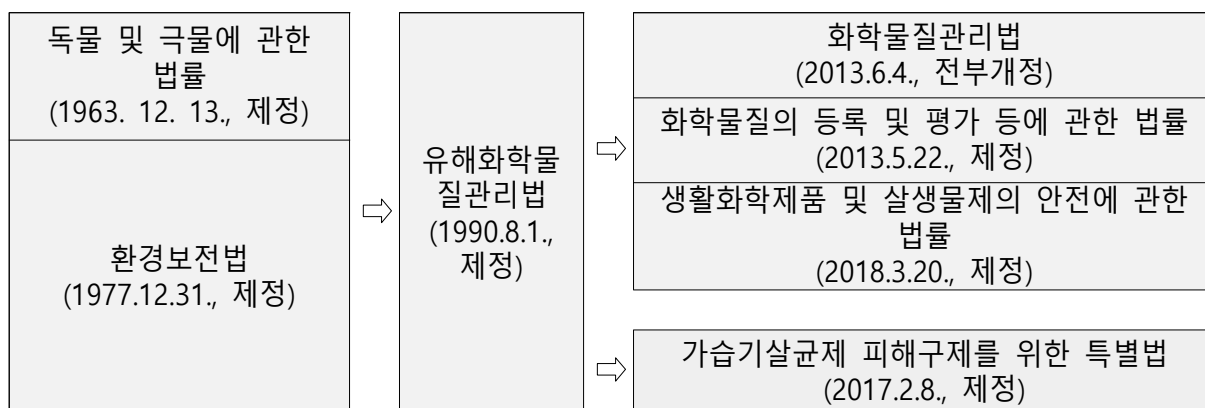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생 이후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20대 국회에서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²⁾을 제정하였고, 동 법률에서는 가습기살균제의 사용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또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하고,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의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확립되었음.

[화학물질 관리 법률의 제·개정 변화]



특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법률」³⁾에서 세정

제31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 1의2. 제35조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
2. 정부출연금
3. 피해구제자금의 운영 수익금
4. 적립금
5. 피해구제자금의 결산상 잉여금
6. 차입금
7. 기부금
8. 제26조에 따른 환수금
9. 그 밖의 수입금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와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중에 위해성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⁴⁾으로 고시한 제품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안전기준을 고시하고,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으면 아니 되는 화학물질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3. 용기·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⑧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중량 또는 용량
5.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6.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7.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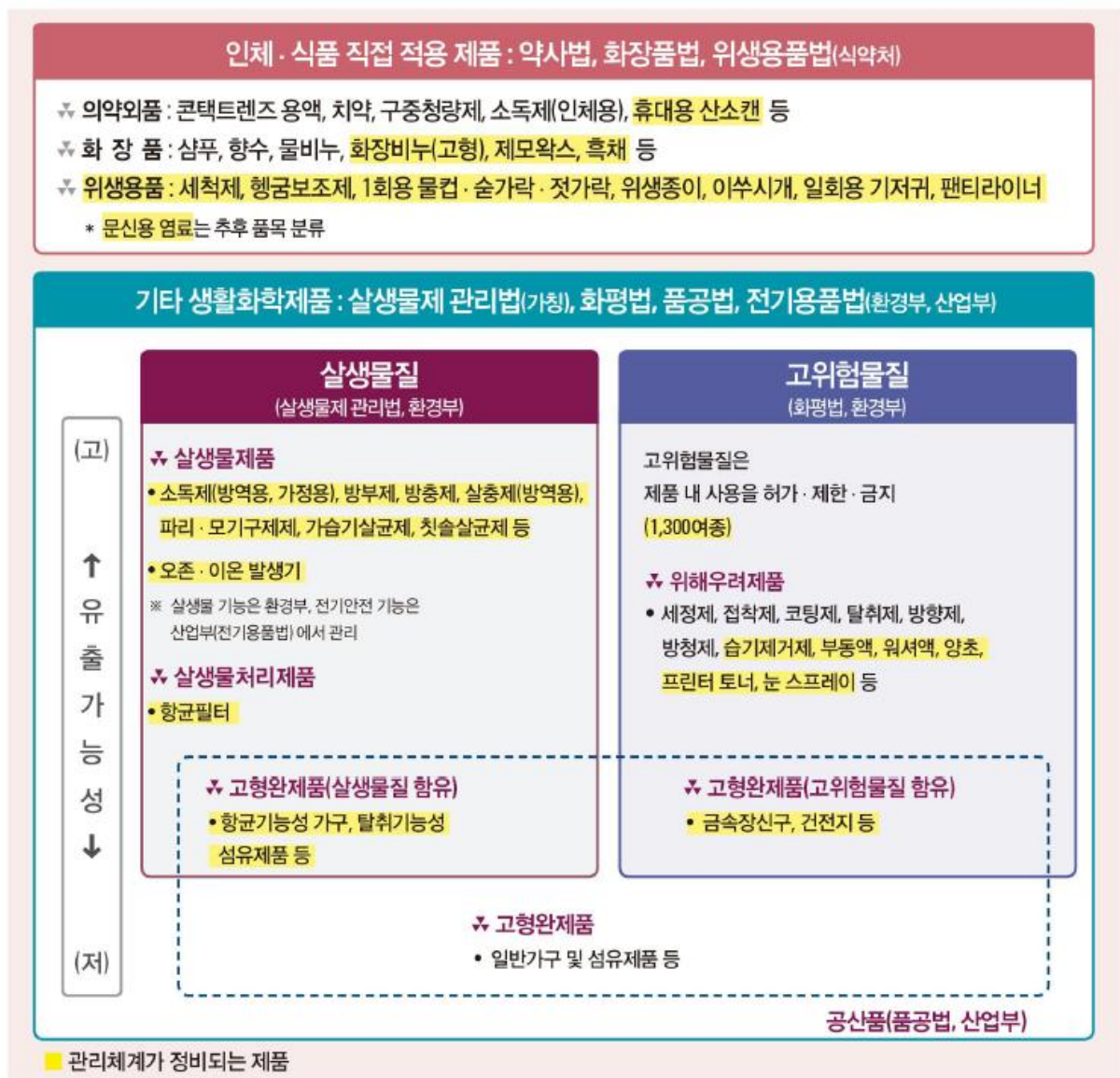
⑨ 제1항에 따른 확인, 제4항에 따른 신고,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에 따른 승인,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변경신고 및 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2024년 기준 총 44개 품목에 대하여 약 17,000개 업체에서 213,574개의 제품을 등록하였음.

(참고자료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현황

제조자에게 안전기준 적합 확인 의무를 부과하며, 제품의 겉면에 사용된 화학물질 등을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동 제정안의 경우 제20대 국회의 가슴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대한 논의 당시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⁵⁾되었으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폐기된 바,

2018년 3월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동 제정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을 신설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을 개정하여 보완하는 방안⁶⁾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⁷⁾에서는, 기존에 개별법에 근거를 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환경오염·석면·살생물제품 등에 대한 피해구제의 심사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및 구제급여의 지급 절차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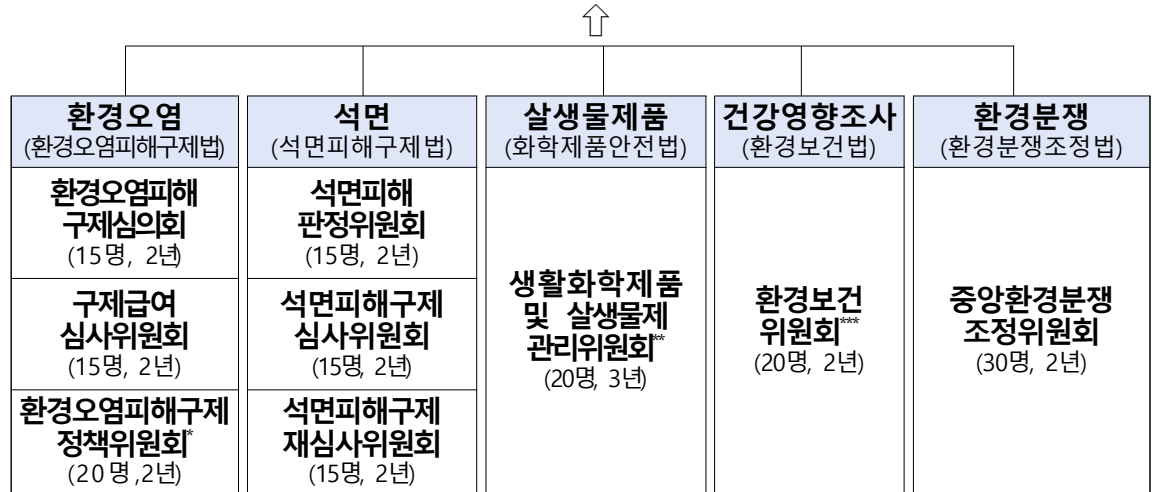
5) 의안번호2000756,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6인, 2016.7.7.),

6)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7)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85호, 2024.3.19. 전부개정, 2025.1.1.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 조사-분쟁 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개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100명(상임위원 3명 이내), 2년 임기)	
- (기능)	역학조사(청원 포함), 분쟁조정, 피해구제심사·재심사
- (운영)	위원회 심의의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분과위원회(건강피해조사, 환경피해구제, 환경피해구제재심사) 구성(9~20명 이내)-운영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폐지 후 책임보험 관련 기능은 환경보건위원회로 이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관리위원회) 살생물제품피해구제급여 심사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

*** (환경보건위원회) 건강영향조사(청원)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

2. 조문별 검토

1) 목적 및 정의

제정안은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의 화학적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안 제1조), “생활화학용품”, “생활화학용품질병”, “생활화학용품피해자” 등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의 화학적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생활화학용품의 화학적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화학용품”이란 소비자가 가정, 학교, 사무실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품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 제품 및 위해우려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품을 말한다.
2. “생활화학용품질병”이란 생활화학용품을 사용하는 중 발생하는 질병으로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생활화학용품의 화학적 부작용과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제14조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3. “생활화학용품피해자”란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하여 직접 건강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제조사등”이란 생활화학용품의 개발·제조·판매·유통·수입을 한 자를 말한다.

제 정 안

5.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의 화학적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효적인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제정안의 제명 및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에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2조에서는 동 법률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로서 “생활화학용품”, “생활화학용품질병” 및 “생활화학용품피해자” 등을 규정하여 생활화학용품을 사용하는 중 발생한 질병 및 그로 인하여 건강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만, 제정안의 목적 및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및 중복 여부를 감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의 목적인 생활화학용품의 화학적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의 경우 2018년 3월 20일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⁸⁾에서 살생물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건강 또는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⁹⁾를 既마

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2조제1호의 “생활화학용품”은 소비자가 가정, 학교, 사무실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품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¹⁰⁾의 제품 및 위해우려제품¹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품에 해당한다고 정의하였는데,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2018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¹²⁾의 “안전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제48조의2(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원인자”라 한다)가 무자력인 경우
2.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아니하여 장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제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

나.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1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위해우려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제품 중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 등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나.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과 같이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

(2018.3.20. 삭제)

1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8.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으로 그 정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됨에 따라 동 제정안의 발의일('24.9.25.) 기준 삭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개념임.

또한,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생활화학용품질병”은 생활화학용품을 사용하는 중 발생하는 질병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생활화학용품의 화학적 부작용과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특정 질병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새로운 질병이 확인될 때마다 하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생명·신체에 발생된 피해’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행법물에 따른 환경원인 피해 관련 정의 조항]

구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환경오염피해	살생물제품피해
근거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정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u>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u> (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u>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u> 및 재산에 발생된 <u>피해</u> (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u>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u> (후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

는 제품을 말한다.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2) 국가 등의 책무, 피해자단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정안은 생활화학용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피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피해자단체의 구성(안 제4조)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5조)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이 생활화학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화학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과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시책과 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피해자 실태파악 및 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자단체) ① 생활화학용품피해자와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피해자단체는 생활화학용품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단체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1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44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로 본다. ② 제4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 제41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44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첫째, 안 제3조에서는 생활화학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와 이에 협조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데,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¹³⁾ 제4조에서 환경부장관에게 5년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동 제정안의 취지가 일부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4조는 생활화학용품피해자와 유족은 피해자단체를 구성하여 그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단체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¹⁴⁾ 및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

1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활화학제품의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방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방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9조(피해자단체)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피해자단체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피해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31조제1

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¹⁵⁾과 같이 특정 사고로 인하여 피해 대상인 국민이 한정되는 경우에 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생활화학용품 피해의 경우 원인제품과 물질이 다양할 수 있어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 충돌 및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의 소통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5조는 심사·재심사 청구에 따른 시효의 중단은 「민법」상의 청구와 같이 간주하도록 하고, 재심사 청구의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며, 동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상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3) 손해배상책임 및 인과관계의 추정

제정안은 생활화학용품피해가 발생한 경우 생활화학용품의 제조사 등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조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며(안 제6조),

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5)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피해주민단체)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단체(이하 “피해주민단체”라 한다)의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주민단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생활화학용품질병의 발생이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용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안 제7조).

제 정 안
제6조(손해배상책임) 생활화학용품의 제조자들은 그 생활화학용품을 사용한 자가 사망하거나 생활화학용품질병에 걸린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제조자들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생활화학용품질병 발생이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하여 생활화학용품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생활화학용품의 생산과정, 사용된 설비, 사용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피해의 양상 및 그 밖에 피해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정안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생활화학용품으로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제조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책임 소재 증명의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특히 인과관계의 추정에 대해서는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¹⁶⁾에서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16)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해당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우선 추정하고,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 방지를 위한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추정을 배제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음.

다만, 손해배상의 연대책임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생활화학용품의 개발·제조·판매·유통·수입을 한 전체 제조자등에 대하여 책임 소재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개발·제조뿐만 아니라 단순 판매·유통한 다수의 제조자들에게도 연대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0조17)에서는 환경오염피해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사업자가 둘 이상이고, 어느 사업자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연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4) 정보청구권

제정안은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제조자등 간의 구상권의 범위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와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③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된다.

17)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연대책임)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사업자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들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제 정 안
제8조(정보청구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화학용품피해자는 해당 제조자등에게 제7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받은 제조자등은 생활화학용품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다른 제조자등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자등에게 제7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자 및 제조자등은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제조자등에게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해당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청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8조는 생활화학용품피해자의 제조자등에 대한 정보청구권 및 제조자등 상호 간의 정보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제조자 입장에서도 상호간의 책임 범

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음.

참고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¹⁸⁾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특별법」¹⁹⁾에도 이와 유사한 정보청구권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5) 구제급여의 종류 및 지급 등

개정안은 생활화학용품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종류(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익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를 규정하고, 개별 구제급여의 지급대상·금액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안 제9조 및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18)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정보청구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다른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1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정보청구권)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가습기살균제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제 정 안

제9조(구제급여의 종류)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5. 구제급여조정금

제19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피인정자가 생활화학용품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생활화학용품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피인정자가 생활화학용품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생활화학용품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요양급여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제12조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20조(요양생활수당) ① 요양생활수당은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생활수당은 요양급여 외에 생활화학용품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되되, 그 지급은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④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21조(장의비 및 간병비) ① 장의비는 피인정자가 생활화학용품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 정 안

② 장의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장의비의 지급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④ 간병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1. 생활화학용품피해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생활화학용품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2. 생활화학용품피해자로서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생활화학용품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3. 생활화학용품피해자로서 이 법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생활화학용품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②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해당 생활화학용품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제13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액 및 제2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장의비의 금액은 제21조에 따른 장의비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23조(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한다.

②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관하여 제26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미지급요양급여등”은 “특별유족조위금등”으로 본다.

제24조(특별유족인정)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생활화학용품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제 정 안

② 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구제급여조정금) ① 피인정자가 해당 생활화학용품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생활화학용품질병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피인정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위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지급한다.

②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관하여 제26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미지급요양급여등”은 “구제급여조정금”으로 본다.

③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정안은 ①의료비 성격의 요양급여(안 제19조), ②요양과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요양생활수당(안 제20조), ③피인정자의 간병 및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의비·간병비(안 제21조) 및 ④ 법 시행 이전 사망한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안 22조)와 법 시행 전후 피해자 간 구제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제급여조정금(안 제25조)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러한 구제급여 체계는 현행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살생물제품피해, 석면피해에 대하여 지급되는 구제급여 종류와 유사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음.

다만, 제정안 제21조제4항에서는 구제급여의 종류 중 하나로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전부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포괄위임에 해당하므로 간병비의 지급 대상·범
위 등에 관한 대략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제정안 제9조의 구제
급여의 종류에 간병비를 포함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행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구제급여 조항과 제정안 간 비교]

구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살생물제품피해	석면피해	제정안
구제 급여 종류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간병비 4의2. 장해급여 5. 특별유족조위금 6. 특별장의비 7. 구제급여조정금 (법 제12조)	1. 진료비 2. 장애일시보상금 3. 사망일시보상금 4. 장례비 (법 제48조의6)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례비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5. 구제급여조정금 (법 제5조)	1.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5. 구제급여조정금 (안 제9조)
				6. 간병비 (안 제21조)

6) 구제급여 지급·지급중지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

개정안은 ①구제급여·요양급여의 지급 및 중지에 관한 요건을 규정
하고, ②제3자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구상권의 근거를 마련하며, ③구
제급여 수급권의 보호, 조세·공과금 면제 및 부당이득 징수 등 수급권
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및 제26조부터 제29
조까지).

제 정 안
제10조(구제급여의 지급 등) ①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②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2조에 따른 생활화학용품질병 피해구제기금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④ 구제급여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구제급여 지급 중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48조제4항·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9조에 따른 진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6조(미지급 요양급여) ① 제19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제2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하 “미지급요양급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미지급요양급여등을 지급한다.

② 미지급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③ 미지급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미지급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27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 중지를 결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피인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요양급여등의 지급 중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

제 정 안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부당이득 징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구상권) 환경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구제급여사유가 생겨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제30조(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1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이 법에 따른 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첫째, 제정안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등에는 구제급여 및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에 대한 지급을 중지(안 제11조 및 제27조)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액을 환수(안 제28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피해구제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제정안 제11조의 경우 구제급여 지급 중지의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 제11조와 제27조를 통합하여 요양급여등과 함께

규정함과 동시에 행정상의 절차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제정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는 환경부장관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제급여 수급권은 양도·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며, 조세·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수급권에 대한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음.

7)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의 신청 및 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제정안은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피해 인정을 위해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의학자·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용품피해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피해 인정 신청 절차,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의 방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제 정 안
제12조(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신청 등) ① 제9조제1호·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활화학용품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의 생활화학용품피

제 정 안

해 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같은 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자에게 생활화학용품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생활화학용품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의 절차·방법, 제4항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의료수첩의 서식, 제6항에 따른 지원조건·금액·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생활화학용품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가 자신의 생활화학용품질병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을 갱신할 수 있다.

제 정 안

- ④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자의 생활화학용품질병이 나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 ⑤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을 갱신하거나 철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피인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의 갱신 및 철회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생활화학용품피해 판정위원회) ①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용품피해 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생활화학용품질병 결정에 관한 사항
 - 2.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 3.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의 갱신 또는 철회에 관한 사항
 - 4.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 5. 제8조제4항·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환경의학자
 - 2. 환경전문가
 - 3. 위생학자
 - 4. 독극물학자
 - 5. 정신건강 전문가
 - 6. 피해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③ 판정위원회는 산하에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판정위원회 및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판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

제16조(판정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에서 제척(除斥)된다.

1. 판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판정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판정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판정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판정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대상이 된 결정 등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판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심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③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를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18조(회의의 공개 및 방청) ① 판정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제 정 안

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의 보호 및 영업비밀의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첫째, 제정안 제12조는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생활화학용품 피해인정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면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용품피해 환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 및 피해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생활화학용품의 사용과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충분한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90일(60일+추가 30일)의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 제13조는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피인정자가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는 구제급여 지급 등의 피해구제를 종결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음.

셋째, 제정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는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을 심의하기 위한 생활화학용품피해 판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²⁰⁾에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위원회가 석면, 환경오염피해 및 살생물제품피해에 대한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므로, 개정안도 이에 맞추어 생활화학용품 피해인정 심의의 주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하거나,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8)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구제기금의 설치·운영

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용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을 위해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구제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출연금과 생활화학용품피해구제부담금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등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20) 법률 제20385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2025.1.1.시행예정) 제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결정·재결 등

제 정 안

제32조(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구제기금)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제38조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구제부담금
3. 제28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금
4.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금품, 그 밖의 재산
5. 기금운용 수익금
6. 적립금
7.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8. 차입금
9. 그 밖의 수익금

③ 정부는 구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구제급여의 지급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제47조에 따라 위임 및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 및 출연금
4.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제3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환경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예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예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 정 안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35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7조(기금의 출납 등)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의 출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정부 또는 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생활화학용품피해구제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안 제32조), 구제급여의 지급,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출연금 등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안 제33조)으로,

생활화학용품질병의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생활화학용품의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한 부담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기금의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국가재정법」²¹⁾에 따르면 기금의 신설 요건 중 하나로 기존의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어야 하는데, 2022년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기금을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구제계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국가재정법」 제5조²²⁾에 따르면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동 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21)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22)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속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제1항 관련)

9) 생활화학용품피해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제정안은 생활화학용품의 제조업자 등에게 생활화학용품피해구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38조), 부담금의 산정·납부 방식(안 제39조) 및 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안 제40조)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 정 안
제38조(생활화학용품피해구제부담금)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중 생활화학용품의 제조업자등에게 생활화학용품피해구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9조(부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① 제38조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액 2. 예상되는 구제급여의 지급액 3. 전년도까지 적립된 부담금의 총액 4. 그 밖에 생활화학용품질병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비용 ②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이의신청) ① 제38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담하는 자가 부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

제 정 안

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8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담하는 자가 부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정안은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하여 직접 건강피해를 입은 생활화학용품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등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의 재원으로 생활화학용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생활화학용품피해구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 근거와 산정 방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보다 원활하게 지급하고자 하려는 취지로 생각되나, 부담금 지급의무자의 범위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 제38조에서는 「제조물 책임법」²³⁾에 따른 제조업자 중 생활화학용품을 제조하는 자 전부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사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환경정책 기본법」²⁴⁾의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르면 피해 발생

23)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원칙적으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현행 가습기살균제피해, 석면피해,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의 경우에도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책임이 있는 자에 한정하여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음.

[현행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분담금 조항]

구분	가습기살균제	석면피해	살생물제품피해
근거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4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6(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대상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분담금 계산	$\text{분담금} = 1 \text{천억원} \times \frac{(\text{가습기살균제사용비용} \times 2.5 + \text{가습기살균제판매비용} \times 1)}{3.5}$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text{분담금} = 1 \text{인당 지원에상액} \times \text{피해자수} \times \frac{(\text{원인제품사용비용} \times 2.5 + \text{원인제품판매비용} \times 1)}{3.5}$

다만, 「약사법」 제86조의2²⁵⁾의 경우에는 전체 의약품의 제조하거

24) 「환경정책 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5) 「약사법」 86조의2(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로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부과·징수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은 이 법에 따라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의 생산액 또는 수입액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기본부담금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작용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판정된 의약품에 부과하는 추가부담금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기본부담금: 전년도 의약품 생산액 및 수입액의 1000분의 1

2. 추가부담금: 전년도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지급액의 100분의 25. 다만, 그 의약품의 전년도 생산액·수입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수입하는 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의약품의 생산액 또는 수입액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약품에 부과하는 추가부담금이 있고, 그 한도액에 대해서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제정안의 생활화학용품피해구제부담금의 경우에도 피해구제라는 공익과 관련 기업들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담금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전체 제조업자에 대하여 도입하는 경우에는 위험 정도에 상응하여 차등적인 부담금 분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²⁶⁾에 따르면 부담금은 별표²⁷⁾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동 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2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27)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10) 불복에 대한 심사청구 등

제정안은 ①구제급여의 지급결정·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 환경부에 심사청구를 제기(제41조)할 수 있도록 하고, ②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제44조)를 하여 재심사위원회에서 재결하도록 함(안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 정 안
제41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람은 환경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2. 제12조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3. 제2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4. 제28조에 따른 징수금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심사위원회) ① 제41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제 정 안

2.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등 생활화학용품질병 관련 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는 “심사위원회”로 본다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심사청구에 관한 심리·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41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제44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45조에 따른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제 정 안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5조(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 ① 제44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재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등 생활화학용품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본다.

⑤ 그 밖에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재심사위원회”로, “제41

제 정 안
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은 “제44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제정안은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제10조), 생활화학용품 피해인정(제12조), 특별유족인정(제28조) 및 징수금(제28조)에 대한 결정 또는 인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환경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3심제 불복절차 및 이를 심사하는 생활화학용품질병구제 심사위원회·재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화학용품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생각됨.

다만, 제정안의 3심제 불복절차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²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²⁹⁾에 따른 살생물제피해구제는 인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청구

2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재심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이 조에서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2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재심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만을 할 수 있도록 2심제(①피해인정→②재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고,

3심제(①피해인정→②심사청구→③재심사청구)로 불복 절차를 운영
여 온 석면피해구제 및 환경오염피해구제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법」³⁰⁾ 및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에 관한 법률」³¹⁾에서 2심제로 개정하였음을 고려할 때,

생활화학용품의 피해배상과 관련하여서도 화학제품 관련 피해구제
절차의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³²⁾ 측면에서 2심제 구조로 운영하는 방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
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 「환경
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구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

1.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각하에 관한 사항

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
한 사항

4.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30) 법률 제20383호 「석면피해구제법」(2025.1.1. 시행예정)

(개정이유)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대한 두 단계의 불복 절차 중 두 번째 불복 절차를 폐지하
고, 첫 번째 불복 절차의 명칭을 심사청구에서 재심사청구로 변경하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
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1) 법률 제20386호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25.1.1. 시행예정)

(개정이유)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대한 두 단계의 불복 절차 중 두 번째 불복 절차를 폐지
하고, 첫 번째 불복 절차의 명칭을 심사청구에서 재심사청구로 변경하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2) 피해인정, 심사 및 재심사의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도 각각의 결정에 대하여 제
기할 수 있어 피해 인정 여부에 대한 최대 6번의 심사·결정이 가능함(환경부).

제위원회³³⁾가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담당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개정안 또한 이에 맞추어 생활화학용품 피해 관련 심사·재심사의 주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하거나,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11) 보칙(제3장)

제정안 제3장은 권한의 위임·위탁, 환경부 장관의 보고·진찰 요구,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등 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생활화학용품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7조부터 제54조까지).

33) 법률 제20385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2025.1.1.시행예정) 제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피해조사
2. 환경분쟁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 나.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
 - 다.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 라. 화학물질 유출·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또는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한 경우
 - 마. 살생물제품의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결정·재결 등

제 정 안

제47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보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등(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게 대하여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등의 직원이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 및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환경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진찰요구 등)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2.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제50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제 정 안

2. 판정위원회의 위원

3.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제51조(조사 및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화학용품질병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신고센터로 지정하고, 생활화학용품질병 조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2.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신고센터의 지정 방법·절차, 지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및 기관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5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피해자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 생활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판정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정안은 생활화학용품피해 구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권한의 위임·위탁, 환경부 장관의 보고·진찰 요구,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의 절차적인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11) 벌칙(제4장)

제정안 제4장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와 제공·열람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안 제55조), 생활화학용품피해의료수첩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등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6조).

제 정 안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 2.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공받거나 열람한 정보를 해당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3. 제5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제5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 정 안
1.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생활화학용품피해의료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2.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른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8조제4항·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정안 제4장은 동 제정안 본칙에서 규정한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음.

문 의 처
02)6788-5536

※ 참고자료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현황('24.8)

품 목	업체		제품	
	업체수(개소)	비율(%)	제품수(개)	비율(%)
계	17,943	100	213,574	100
1. 세정제	1,511	8.42	8,902	4.17
2. 제거제	537	3.00	1,763	0.83
3. 세탁세제	494	2.76	3,652	1.71
4. 표백제	170	0.94	627	0.29
5. 섬유유연제	281	1.57	2,387	1.11
6. 광택 코팅제	492	2.74	2,803	1.31
7. 특수목적코팅제	730	4.07	3,631	1.7
8. 녹 방지제	92	0.52	270	0.13
9. 윤활제	114	0.64	324	0.15
10. 다림질보조제	21	0.12	53	0.02
11. 마감제	4	0.03	8	0.00
12. 경화제	0	0.00	0	0.00
13. 접착제	399	2.22	1,264	0.59
14. 접합제	183	1.02	1,198	0.57
15. 경화촉진제	4	0.02	7	0.00
16. 방향제	4,800	26.75	74,696	34.98
17. 탈취제	1,730	9.64	13,716	6.42
18. 물체 염색제	50	0.28	907	0.43
19. 물체 도색제	48	0.26	7,301	3.41
20. 자동차용 워셔액	40	0.23	246	0.11
21. 자동차용 부동액	53	0.30	209	0.10
22. 인쇄용 잉크·토너	219	1.22	15,481	7.25
23. 인주	6	0.03	42	0.02
24.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72	0.41	317	0.15
25. 미용 접착제	125	0.69	883	0.41
26. 문신용 염료	72	0.41	5,366	2.51
27.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26	0.14	42	0.02
28. 살균제	689	3.84	3,470	1.62
29. 살조제	9	0.05	15	0.00
30.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0	0.00	0	0.00
31. 감염병 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71	0.39	135	0.07
32. 기피제	62	0.34	351	0.16
33. 보건용 살충제	105	0.58	846	0.39
34. 보건용 기피제	0	0.00	0	0.00
35.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74	0.41	638	0.30
36.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25	0.14	68	0.03
37. 목재용 보존제	5	0.03	6	0.00

품 목	업체		제품	
	업체수(개소)	비율(%)	제품수(개)	비율(%)
38.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66	0.36	757	0.35
39. 초	4,348	24.24	60,395	28.27
40. 습기제거제	192	1.07	720	0.34
41. 인공 눈 스프레이	5	0.03	5	0.00
42. 공연용 포그액	19	0.11	73	0.03
43.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0	0.00	0	0.00
44.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0	0.00	0	0.00

자료: 환경부